



창업투자보조금 지원에 대하여

정부에서는 비수도권에서의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수도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중이다.

Q 중소기업에게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.

A 2009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)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의하여 창업한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

공장 등의 건축비,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임대 공장의 경우 임대비용을 제외한 생산 및 연구 설비, 기계류 등의 구입을 위하여 3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어야 합니다. 또 창업 투자보조금 신청 시점의 상근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.

이들 기업은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 한 후 현장 평가를 받게 되며 최종심사를 거쳐 제조업 창업에 투자한 금액의 10%(10억 원 한도)를 3년간 분할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.

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신청서는 인터넷(www.changupnet.go.kr → 우측상단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신청하기)을 통해 작성 입력한 후 서류는 공장소재지 광역시·도 단체장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.

Q 유가환급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?

A 근로자에게 지급될 유가환급금은 2007년도 기준 총 급여가 3,700만 원 이하(자영업자는 종합소득이 2,400만 원 이하)근로자 중 올해 7월~내년 6월 중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.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내년

3월에 신청하면 한달 뒤 근로자 계좌로 입금되며 각각 총 급여 3,000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라면 총 48만 원의 가계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.

근로자의 경우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이전 금액인 총 급여(보수 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)가 3,600만 원 이하인 경우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기준은 2007년 총 급여액으로 전체 근로자 1,300만 명 중 980만 명이 이에 해당됩니다.

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총급여에 따른 유가환급금은

- 3,000만 원 이하 24만 원
- 3,000만 원~3,200만 원 18만 원
- 3,200만 원~3,400만 원 12만 원
- 3,400만 원~3,600만 원 6만 원

자영업자는 유류비, 감가상각비, 수선비 등 차량 운영비를 전액 경비로 인정해주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에 비해 지급기준을 낮게 책정, 종합소득금액(각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) 2,400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.

유가보조금 등 수령자는 지급을 제외하기로 해 전체 자영업자 460만 명 중 4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지급대상이 되려면

- *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
- * 2007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신고를 한 사람으로
- * 종합소득금액이 2,4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.

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유가환급금은

- 2,000만 원 이하 24만 원
- 2,000만 원~2,130만 원 18만 원
- 2,130만 원~2,260만 원 12만 원
- 2,260만 원~2,400만 원 6만 원입니다.

본 페이지는 벤처 창업과 운영에 관련한 독자 질문으로 꾸며집니다. 궁금하신 점을 이메일 okpr@paran.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